## 퇴직합의서

## 인적사항

성명		
소속	직위	
연락처		
입사일자	퇴직일자	

## 합의사항

- 1.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 제 30 조에서 정한 14 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더라도, 본 합의서에 따른 조건으로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2.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이후 회사에 대해 금전채권(퇴직급여 포함) 및 기타 모든 권리주장을 포기하며, 회사 명예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리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
- 3.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대여받은 사택 및 회사 관련 채무를 반환하며, 불이행 시 회사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
- 4.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합의하며,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: 000 (인)